

**Joo AH JUNG**

**From:** Joo AH JUNG on behalf of Trustee Compliance SEL  
**Sent:**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오후 4:17  
**Cc:** Trustee Compliance SEL; Han Suk KIM; Soo Ah KIM; Joo AH JUNG  
**Subject:** [재발송]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의 건  
**Classification:** PUBLIC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9조 2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시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집합투자업자명: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 집합투자기구명: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
-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위반내용:
  - 신탁계약서 제 17 조(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제 1 호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50% 미만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 신탁계약서 제 17 조(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제 12 호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10%초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 관련 자집합투자기구명:
  -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
  - 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

※ 첨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의견서. 끝.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



집합투자업자의  
의견서.pdf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수신에 대한 회신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nvestment Compliance**

Trustee and Custodian Services | Fund Services | HSBC Securities Services  
HSBC Building, 37 Chilpae-Ro, Jung-Gu, Seoul, Korea

---

Phone Joo Ah Jung 82-2-2004-8936, Mina Song 82-2-2004-8963, Soo Ah Kim 82-2-2004-0571

Fax 82-2-6716-0917

Email [cmptrustee@kr.hsbc.com](mailto:cmptrustee@kr.hsbc.com)

---

Protect our environment - please only print this if you have to!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시 대상	집합투자업자명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기구명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행위의 법령 등 위반내용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제1호 및 제12호 위반
신탁업자 조치사항	철회요구사항	
	변경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제1호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50% 미만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또한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제12호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10%초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7조에 따라 시정 요청 하였음.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신탁업자 요구일자	2018년 06월 25일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2018년 06월 29일 현재 미이행
기타 사항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의견서를 동봉함.

2018년 06월 29일  
 홍콩상하이은행 증권관리부서장



담당자 : 직위 부분부장 성명 김한석 (☎ 2004-0596)



[첨부]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의  
신탁계약서 위반 건에 대한 의견서**

1. 신탁계약서 제 17 조제 1 호의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의 미준수

가. 위반사유

- 2018.6.21 일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이하 ‘모펀드’)에서 보유 중인 Appvion 의 해외대출채권이 해당기업의 비상장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해외대출채권에서 제외되면서 신탁계약서상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대출채권등”)의 최소 편입비를 50%에 미달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건의 출자전환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여 대량의 환매청구가 예상되어 본 건이 확인된 2018.6.22 일에 해외대출채권등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의 신속한 해소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6.22 일부터 2018.6.25 일까지 이틀간 모펀드에 대한 환매청구금액은 33,627,361,402 원으로 6.21 일 기준 순자산의 약 22.9%의 환매청구가 있었으며, 환매는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기존 대출채권의 출자전환과 대량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소계획 및 의견

- 당사는 모펀드에 대한 환매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펀드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모펀드내 보유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환매금액이 모펀드에 반영되면 본 건은 자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량환매 추이가 계속될 경우 환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해외대출채권등을 지속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 미달 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에서는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5 일의 유예를 부여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 등의 권리행사, 그 밖에 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계약서나 관련법령의 취지를 보면 대량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나 자산의 취득없이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편입비 미달 건이 발생한 직접사유가 기존 자산의 전환에 따른 것이지만, 대량의 환매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유동성을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일시적인 해외대출채권등의 편입비 미달에 유예를 요청 드립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국민일보빌딩 3층 (우) 07241

대표전화 (02) 3774-0600

팩스 (02) 780-0390

## 2. 신탁계약서 제 17 조제 12 호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의 미준수

### 가. 위반사유

- 2018.6.21 일 모펀드에서 보유중인 Appvion 의 해외대출채권이 해당기업의 비상장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으나 해당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일정기간의 매각제한 등의 사유로 즉시 매도가 어려워져 해당 신탁계약서상 주식 최대 편입비 10%를 초과하였습니다.

### 나. 해소계획 및 의견

- 미국에 소재한 모펀드의 해외위탁운용사는 운용 중인 다른 해외펀드에서도 Appvion 의 해외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탁받은 모펀드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모든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주채권단으로서 기업재무구조개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해외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해당기업의 주요주주가 되었습니다. 해당국가의 법령은 이러한 주요주주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슈로 인하여 일정기간 해당기업 주식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어서 모펀드의 신탁업자의 시정 요청에도 즉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나 당사에서는 해외운용위탁사 및 본사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현지의 매매중개사를 통하여 적절한 매수처를 찾았으므로 수일 내에 본 건의 편입비 초과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 한편,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 등의 권리행사, 그 밖에 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취지를 보면, 자산의 취득없이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편입비 초과 건이 기존 자산의 전환에 따른 것이지만, 출자전환된 비상장 주식 매각의 즉시 매도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환매에 따른 모펀드 자산총액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편입비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끝.

프링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국민일보빌딩 3층 (우) 07241

대표전화 (02) 3774-0600

팩스 (02) 780-0390